

창원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1나6677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1나66774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424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림

담당변호사 김혜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정인

변론종결 2023. 3. 10.

판결선고 2023. 4. 14.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가소424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이하 ‘우즈베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년경 노무법인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에게 중고차 수출사업을 위한 원고의 체류자격(이하 ‘사증’이라 한다) 발급 및 사업자등록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17.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2. 행정사 F에게 원고의 사증발급 및 사업자등록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6. 8. 원 ·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무역도매업(중고자동차 및 관련부품)에 관한 사업자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6. 20.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였고, 2013. 2. 1.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 단기상용(C-3-4)1) 사증발급을 신청하였으나, 2013. 2. 12.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은 2014. 6. 30. 폐업처리 되었고, 원고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체류하다가 단기상용(C-3-4) 사증을 발급받아 2017. 12. 12. 국내에 입국하였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중고차 수출사업에 필요한 기업투자(D-8) 또는 무역경영(D-9) 사증(통틀어 가리킬 때는 ‘사업용 사증’이라 한다)발급 및 사업자등록 업무를 대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원고를 속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선택적 청구)

가)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용 사증발급 및 사업자등록 업무를 대신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약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위 약정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내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국내에서 중고자동차 무역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대신 원고의 사증발급 및 사업자등록, 사무실 임대 등에 관한 업무를 피고가 맡기로

하였고, 그 후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공동사업의 경비로 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원고가 당초 투자하기로 약정한 1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다고 함에 따라 원 · 피고의 공동사업 추진이 무산된 것인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5, 6, 8, 10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6. 8.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이후인 2012. 7. 말경 피고로부터 사증발급 신청에 사용할 초청장을 받았다는 것인바(갑 제8호증의4 중 4쪽 참조), 피고가 원고의 사업용 사증발급 및 사업자등록 업무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체류 안내메뉴얼(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려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기업투자(D-8) 사증의 발급대상이 되고, 그 사증발급의 허가요건으로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일 것’이 규정되어 있다. 무역경영(D-9) 사증 역시 신규사업자의 경우 ‘투자금액 3억 원 이상일 것’이 그 허가요건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2. 3.경부터 사업용 사증발급에 필요한 자본금으로 미합중국화 89,926달러2)를 마련해 두었으나, 나중에 국내에 돌아왔을 때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원고의 2022. 6. 17.자 준비서면 2쪽 참조). 이러한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2013. 2. 1. 신청한 사증이 단기상용(C-3-4) 사증인 점에 미루어 볼 때, 원고 스스로도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지

않고는 사업용 사증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2013. 2. 12. 원고의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6. 20.부터 2012. 6. 24.까지3)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한 사실이 있고, 원고는 그동안 피고와 함께 지낸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 당시 원 · 피고를 공동사업자로 한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상태였으며, 원고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시기가 2013. 2. 1.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사증발급이 불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왔다’는 원고의 주장보다 ‘원고가 중고차 수출사업을 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지를 확인하고자 우즈베키스탄에 갔다’는 피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4) 원고는 2017. 12. 12. 국내에 입국하였음에도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약 3년 6개월이 지난 2021. 5. 31.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등을 내어주겠다고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면서 피고를 경찰에 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은 2021. 9. 30. 피고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용 사증발급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고의 고의 ·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대한민국 법인 등에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없이는 사업용 사증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사업용 사증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투자하지 않은 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결국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채무가 불이행된 것은 피고가 아닌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해 지급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구년, 판사 정수미, 판사 강 웅

- 1)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상용활동 및 APEC카드 소지자가 사증 없이 입국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사증으로,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이 90일로 정해져 있다.
- 2) 원고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2012. 6. 20. 기준으로 한화 103,504,826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3) 피고는 2012. 5.경 우즈베키스탄에서 1주일 간 체류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의 답변서 중 4쪽 참조). 그러나 피고의 여권(을 제3호증 중 2쪽 참조)에 날인된 출입국도장에 의할 때, 피고는 2012. 6. 20.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였다가 2012. 6. 24.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